

영등포구의회
제18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4. 4. 11.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1. 경 과

의안 제288호로 2014년 4월 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중 일부용어 신설(안 제2조)

나. 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중 인센티브 부여 근거 마련
(안 제4조제3항)

다. 구민의 책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라. 소유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기간 변경(안 제6조)

- 마.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내용 개선(안 제9조)
- 바. 수수료 감면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2조)
- 사.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33조)
- 아.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 개선(안 제34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폐기물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을 보면
영등포구의 책무 중 생활환경개선 등에 기여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에 대한 청결이행에 필요한 조치명령 기간을 변경함.

또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과 포상금 지급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 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마을청소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장비 지원, 표창 및 그 밖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깨끗한 마을을 가꿀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기존 토지·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등에게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을 내리던 것을 1개월로 기간을 조정함으로써 환경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 판단됨.

생활폐기물 중 음식점 등 가정 외에서 발생하는 연탄재 배출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여 기존의 배출방법을 보완하여 시행하려는 조치라 여겨지며,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관한 지원규정이 현행 조례에서는 규격봉투로만 한정되어 있어 감면대상자에게 맞는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감면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감면 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임.

포상금 지급기준에서는 기존의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에도 신고내용 판단여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기준 또한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춰 조례에 반영함.

- 본 개정조례안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③ 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減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7.16>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7.16>

③ 삭제 <2013.7.16> [제목개정 2013.7.16]